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07.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12. 20. 김민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12.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6.30)

상정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원안가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민전 의원)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편입학과 관련된 부정·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도 성폭력범죄, 성희롱,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국고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징계 시효에 특례를 두고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이 대학(원) 및 고등학교에 입학(대학(원)의 경우 편입학 포함)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52조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개정안은 대학교,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과, 고등학교 등에 입학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징계사유의 시효를 연장하고 있음.(「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

52조제6호 신설)

징계사유의 시효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은 현재 그 외 특례로서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징계사유인 경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시비리의 경우 입시비리가 밝혀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입시비리를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범위에 포함하여 입시공정성 확립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교육공무원이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공정성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원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체계·자구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교육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마련함.

첫째, 입학·편입학생 선발의 방식이 반드시 선발시험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신체검사,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방식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선발시험보다는 ‘선발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지칭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는 ‘대학’이 포함되고,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역시 ‘대학’에 포함되므로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을 학교와 별개로 나열할 필요는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 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 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 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편입학</u> <u>을 포함한다)할 학생 선발과</u> <u>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u> <u>선발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u> <u>거나 선발과정에 부당한 영</u> <u>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u> <u>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u> <u>위</u>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u>따른 학교(같은 법 제29조</u> <u>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u> <u>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u> <u>대학을 포함한다)</u>

	<u>나. 「초·중등교육법」 제2</u> <u>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및</u> <u>이에 준하는 같은 법 제2</u> <u>조제5호에 따른 학교</u>
--	---